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516호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2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열량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 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

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

○ 전화 : 043-719-2254, 팩스 : 043-719-2250, 이메일 : bobo1300@

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

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한되는 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광고에 한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”을 “어린이 기호식품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협의하여 정한다”를 “협의하고,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의2(광고시간의 제한 등) ①		제7조의2(광고시간의 제한 등) ①		
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		-----		
기호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		-----		
·유통·판매하는 자에게 고열		-----		
량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		-----		
유 식품에 대한 「방송법」 제2		-----		
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		-----		
방송(이하 “텔레비전방송”이라		-----		
한다) 또는 「인터넷 멀티미디		-----		
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		-----		
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		-----		
(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		-----		
는 방송으로 한정하며, 이하 “인		-----		
터넷멀티미디어방송”이라 한		-----		
다)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는		-----		
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		-----		
까지로 한다. <후단 신설>		-----		
		-----. 이 경우 제한되는		
		<u>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</u>		
		<u>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</u>		
		<u>광고에 한한다.</u>		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		② ----- <u>어린이</u>		
<u>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 외에</u>		<u>기호식품을</u> -----		
<u>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</u>		-----		
<u>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</u>		-----		

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(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중간광고(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,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고열량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

[illegible]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협의하고, 그 결과를 법 제25조
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
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
고해야 한다.

<삭 제>

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
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
거쳐야 한다.